께쌛♥ 노량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,X) 민법및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

4호 (02/02)

1. 무	권대리인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. ()
2. 본	인의 일부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다. ()
	-권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에게 계약의 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 ()
	·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히 인정된다. ()
은	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받고 중도금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으며, 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였 만,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(5~8번).
5. 甲	은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. ()
	의 중도금지급은 선이행의무이므로 중도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 한다.()
7. Z	은 甲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 ()
8. Z	은 甲의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 ()
	리과 乙이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X토지가 허가구역에서 기정해제가 되었다면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. ()
	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. ()
11. ¹	무효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. ()
	매도인이 사기를 이유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매마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.()

14.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 ()

13. 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. ()

메는 및 노량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.X) 민법및민사특별법 4회

채희대 교수

(02/02)

- 15.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. ()
- 16.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,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. ()
- 17. 채무의 면제나 유증과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유효하다. ()
- 18.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처분할 수 없다. (
- 19. 기한 도래의 효력에는 소급효가 없으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. (
- 20.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본다. ()

매일정리노트(O, X) 정답

- 1. (X) 최고권은 선악불문, 철회권은 선의자에게 인정된다
- 2. (X)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이다
- 3. (X)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
- 4. (X)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
- 5. (X) 유동적무효에서도 해약금해제는 인정된다
- 6. (X)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
- 7. (O) 확정적 무효가 된 이후에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
- 8. (O) 부수적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
- 9. (X) 이미 확정적 무효이므로 허가구역에서 지정해제가 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
- 10. (X) 강행규정 위반, 반사회적 행위, 불공정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
- 11. (X)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
- 12. (O) 취소권의 행사에는 방식의 제한이 없다
- 13. (X)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하는 것은 추인이지 취소가 아니다
- 14. (X)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 취소이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
- 15. (0)
- 16. (0)
- 17. (O) 상대방에게 유리한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
- 18. (X) 조건부권리나 기한부권리는 확정되기 전에도 처분, 상속, 보존, 담보로 할 수 있다
- 19. (X) 기한은 조건과 달리 특약으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
- 20. (X)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